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정 : 1998. 03. 01.

개정 : 2016. 08. 05.

개정 : 2018. 01. 12.

개정 : 2018. 08. 07.

개정 : 2021. 02. 05.

개정 : 2023. 08. 04.

담당 : 교학팀(02-950-5406)

----- 목 차 -----

| | | | |
|----------|-------------|-----------|-------------|
| 제1조(목적) | 제2조(교원의 총원) | 제3조 | 제3조의2(신규임용) |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 제8조(재임용) | 제9조 | 제9조의2(승진) | 제10조(예외규정)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성서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인사의 객관성 있는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총원) ① 교원을 총원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처장이 매 학기 말 전공별 재직교원의 균형유지, 교원확보율,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강의 담당시수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전공별로 교원 총원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한 후 전공별로 통보한다.

② 교학처장이 통보한 교원 총원 계획을 토대로 전공별 교수회의를 통하여 교원 총원 계획을 수립 학과장 경유 교학처장에 교원 총원 요청서를 제출한다.(개정15.02.06)

③ 교학처장은 각 전공에서 제출한 총원 요청서를 검토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원 총원 계획을 확정한다.

④ 교학처장은 총원 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모집공고를 지원 마감일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분야 및 전공과목
2. 응모자의 자격
3. 제출서류의 종류와 수량
4. 서류 제출의 시간 및 장소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삭제

제3조의2(신규임용) ① 연구 및 교육경력 환산을 산출기준은 연구 및 교육경력 환산기준표(별표1)에 의한다.(개정 23.08.04.)

② 기초심사위원회는 지원서류에 입각하여 지원자의 적절성을 총체적으로 심사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분야와 일치 여부
2. 지원서류의 진실성 여부
3. 지원자의 연구실적물의 진실성, 공신력여부
4. 지원자가 거쳐 온 학교 혹은 기관의 공신력여부
5. 기타 지원서류에 나타난 지원자의 적절성

③ 전공심사위원회는 기초심사내용을 살펴보고 지원자의 경력 및 연구실적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연구실적심사기준은 전공심사서(별표 2)에 의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후 전공심사서와 자기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 지원자의 수학한 대학, 대학원 등의 명성과 지원자의 각급학교 성적을 종합 분석하여 지원자의 학문적 경향(Academic Orientation)을 검토
2. 지원자의 석, 박사학위 논문을 살펴보고 지원자의 학문적 수준, 역동성, 진지함 등을 검토
3. 지원자의 연구 실적물 등을 살펴보고 지원자의 학문적 수준, 역동성, 진지함 등을 검토
4. 지원자의 교수능력, 외국어 구사능력 등을 보여주는 자료를 검토
5. 기타 지원자의 학문적 자질을 판단하기 위한 모든 심사.

④ 면접심사위원회는 지원자의 인격과 신앙생활, 우리대학 교육이념에 대한 지원자의 결단, 학문적 자질, 교육능력 또는 외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고 필요 시 강의능력을 평가한다. 면접심사위원의 심사기준과 배점(외국어 및 강의평가 기준포함)은 별표3과 같다.

⑤ 지원 서류 및 기초 전공심사기록 검토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위원 개인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⑥ 면접에서는 지원자가 기초심사, 전공심사 등의 과정에서 서류상 제시한 모든 사항에 대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⑦ 교원을 신규로 임용할 때는 본 대학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의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 없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⑧ 신규로 임용하는 교원의 직급은 교육경력, 연구경력, 기타경력, 연구논문의 실적평가 등에 의하여 사정한다.

1. 신임교원의 직급은 박사학위 소자자라 할지라도 경력이 없는 자는 원칙적으로 조교수직급을 부여한다.(개정 2012. 8. 10)

2. 대학교원의 경력이 있는 신임교원은 전직 대학의 직급보다 상위 직을 부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각 직급에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임교원을 1년 간 대우교원으로 발령할 수 있다.

제3조의3(특별채용) ① 교원인사규정 제7조 제1항의 특별채용은 학교 정책에 따라 특정분야 교원충원이 필요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채용 심사는 교원인사규정 제12조를 준용하여 실시하고, 종합심사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면접심사 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종합심사로 추천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본조신설23.08.04.]

제4조 삭제**제5조 삭제****제6조 삭제****제7조 삭제**

제8조(재임용) ① 교원의 재임용은 교원인사규정 제18조 내지 제21조에 따르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소정의 기간 내에 재임용심사신청서(서식1)를 제출해야 한다.(개정15.02.06)

② (삭제23.08.04.)

③ 삭제(2009.12.09)

④ 재임용 대상자는 임용기간 중 각 영역별 업적평가 결과의 년도별 평균이 신앙영역120점(예배참석 96점 포함), 교육영역 130점, 연구영역100점, 봉사영역 30점 이상의 실점수를 넘어야 한다. 단, 부총장, 대학원장, 부장, 처·실장, 학과장, 교수학습센터장은 연구영역의 점수요건을 년도별 평균 50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2003.4.1)(개정2009.12.9)(개정16.08.05)(개정18.08.07)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임용 하지 않는다.(개정16.08.05)

1. ④항의 각 영역별 업적평가 결과 점수 미 충족시(신설16.08.05)
2. 교원인사규정 제3조(겸직금지)의 규정 위반 시(신설16.08.05)
3. 연구과정 및 연구비 관리에 있어 현저한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신설16.08.05)
4. 연구부정행위 등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신설16.08.05)

⑥ 재임용 업적평가 산정기간은 신규임용자인 경우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그 외 재임용 대상자는 이전 임용기간 마지막 학년도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의 업적을 포함한 2년으로 한다.(신설16.08.05)(개정18.08.07)(개정21.02.05.)

⑦ 재임용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21.02.05.)

제9조 삭제

제9조의2(승진) ① 승진대상자는 승진심사 신청서(서식2)를 승진시기 4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현 직위 진급 이후의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를 준용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2016년부터 상반기에 임용된 자는 임용일부터 동년 8월말까지의 연구실적을 승진심사에 반영한다.(개정21.02.05.)

③ 승진심사에 반영될 연구실적은 교수업적평가 연구영역 평가요소 중 저서, 논문, 학술회의 발표논문으로 제한한다. 단, 학술저서는 초판만 인정한다.(신설03.04.01)(개정18.01.12)

④ 교수업적평가의 영역별 점수는 실 점수를 반영한다. (개정18.01.12)

제10조(예외규정) 이 세칙에서 정한 이외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3.08.04.)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 환산 기준 표

| 구분 | 경력 내용 | 환산인정율(%) |
|-----------------------------|---|----------------------------------|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 | 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 100 |
| |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 100 |
| | 3.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 100 |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 | 1.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100 |
| |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초빙교원 및 겸임교원의 교육경력 | 5시간 이하 30 6시간 40 7시간 이상 50 |
| | 3.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시간강사의 교육경력 | |
| | 4.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 70 |
| |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 70 |
| |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 70 |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70 |
| | 2.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60 |
| | 3. 민간 사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50 |
| | 4.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될 수 있는 경우 | 50 |
| | 5.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50 |
| | 6.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로 재직한 경력 | 50 |
| | 7.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 50 |
| | 8.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 50 |

<별표2>(개정18.08.07)

전공 심사 표

접수번호 :

지원분야 :

1. 초빙분야와 전공일치 여부

| 배점 | 심사기준 | | 점수 |
|-----|---|----------------------|----|
| 10점 | 1. 학부, 석사, 박사 모두일치: 8~10점 2. 석사, 박사 또는 학사, 박사만 일치: 6~8점 3. 박사만 일치: 3~5점 | ○ 논문주제와 세부전공 참조하여 평가 | |

2. 최종학위 수여 대학의 권위

| 배점 | 심사기준 | | 점수 |
|-----|--|---|----|
| 10점 | 1. A등급 : 10점 2. B등급 : 8점 3. C등급 : 6점 4. D등급 : 5점 5. E등급 : 4점 | ○ 최종학위가 석사인 경우 C등급 이하로 평가하며 70% 인정 ○ 필요한 경우 선정기준에 대하여 설명 가능해야 함. | |

3. 최종학위 논문의 수준

| 배점 | 심사기준 | | 점수 |
|-----|---|--|----|
| 20점 | 1. A등급 : 20점 2. B등급 : 15점 3. C등급 : 10점 4. D등급 : 5점 | ○ 박사학위 논문 기준 ○ 최종학위가 석사인 경우 B등급 이하로 평가하며 70% 인정 | |

4. 교육 및 연구경력

| 배점 | 심사기준 | | 점수 |
|-----|--|--|----|
| 10점 | 1. 10년 이상 : 10점 2. 9년 이상 10년 미만 : 8점 3. 5년 이상 9년 미만 : 6점 4. 3년 이상 5년 미만 : 4점 5. 2년 이상 : 2점 | ○ 별표1의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 환산 기준표에 따름 ○ 경력은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음 ○ 석,박사 학위 취득에 따른 경력은 심사에서 제외하나 Post-Doc기간은 인정 | |

<별표3-1>

강 의 평 가 표

접수번호 :

지원분야 :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기준 | 점수 |
|--------------|----|---|----|
| 1. 강의준비 | 10 | 강의준비가 충실하였고 성의 있게 강의를 진행하였다. | |
| 2. 강의방법 | 10 | 강의방법은 적절하였고 설명이 명료하여 이해하기 쉬웠다. | |
| 3. 강의방향 | 5 | 강의 내용이 대체로 본 대학교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었다. | |
| 4. 강의에 대한 답변 | 5 | 질문에 성의 있고 적절하게 답변하였다. | |
| 5. 외국어 강의 능력 | 20 | 1. ToEIC 900점 이상, Tofle 608점 이상 (20점) 혹은 이에 상응하는 강의능력 2. ToEIC 850점 이상, Tofle 588점 이상 (17점) 혹은 이에 상응하는 강의능력 3. ToEIC 800점 이상, Tofle 569점 이상 (14점) 혹은 이에 상응하는 강의능력 4. ToEIC 750점 이상, Tofle 549점 이상 (11점) 혹은 이에 상응하는 강의능력 5. 기타 회화 능력(1~8)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
| 합계 | 50 | | |

* 1, 2항목: 매우 그렇다 10점 그렇다 9점 보통이다 8점 아니다 7점 매우 아니다 6점

* 3, 4항목: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아니다 2점 매우 아니다 1점

* 5항목 : 매우 그렇다 20점 그렇다 17점 보통이다 14점 아니다 11점 매우 아니다 8점

년 월 일

소 속 :

평가자 :

(인)

<별표3-2>

면접 심사 표

접수번호 :

지원분야 :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기준 | 심사 |
|-------------|-----|---|----|
| 1. 신앙고백 | 20 | 1. 거듭남의 확신이 있으며,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에 민감한 삶을 사십니까 2. 성경은 어떤 책이며,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 |
| 2. 본교이해 | 20 | 1. 본교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2. 본교의 특수성에 대한 귀하의 이해는 3. 본교의 창학 정신인 밀알정신에 대한 귀하의 이해는 | |
| 3. 복음전도경험 | 20 | 1. 방문전도, 노방전도, 개인전도, 문서전도, 일대 일 전도 등 실제적인 전도 경험이 있습니까 2. 기회(시간)나 장소가 있을 때마다 전도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3. 영적제자양육을 현재하고 있습니까 | |
| 4. 교수로서의 품성 | 20 | 1. 성품은 내향적 또는 외향적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학문 연구나 학생들을 교수(가르침)함에 있어 개방적이고 열성적인 편이십니까 아니면 집중적이고 정중한 편이십니까 | |
| 5. 학생지도능력 | 20 | 1. 본교의 교육목표에 귀하의 교육적 능력이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2. 귀하가 본교 학생들을 밀알로 키우는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지도해야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총점 | 100 | | |

평가어 : 매우 좋다 20점

좋다 15점

보통이다 10점

그저 그렇다 5점

년 월 일

소 속 :

평가자 :

(인)